

1 입주 신청

Q 1. 전세임대 신청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만 신청가능한가요?

- 입주신청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(읍·면·동사무소)에서만 신청가능 합니다.

다만, 입주자 선정 후 전세주택 물색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내에서, 특별시 또는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도(道)내 사업대상지역에서 가능합니다.

※ 주택물색 가능 지역 예시

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서울 강남구 거주자 | 서울 강동구 소재 주택 지원 가능 |
| | 경기 성남시 소재 주택 지원 불가 |
| 대전 대덕구 거주자 | 대전 유성구 소재 주택 지원 가능 |
| | 충남 천안시 소재 주택 지원 불가 |
| 충북 청주시 거주자 | 충북 충주시 소재 주택 지원 가능 |
| | 충북 괴산군 소재 주택 지원 불가(사업대상지역 아님) |

Q 2.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에 사업대상 시·군·자치구에 전입한 경우도 지원가능 한가요?

-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 사업대상 시·군·자치구에 주민등록 전입되어 거주하는 경우도 입주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.

Q 3. 입주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?

- 입주자 모집은 주요 일간지 및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, 모집기간내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(읍·면·동사무소)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
Q 4.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?

- '세대원 및 세대주'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세대주, 세대주의 배우자,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이 아니어도 주택의 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.

Q 5. 신용불량자도 전세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가요?

- 전세임대주택 지원은 입주대상자의 개인 신용과는 무관하므로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전세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.

Q 6. 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?

- 다자녀 전세임대의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「민법」상 미성년자인 만18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 중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
Q 7.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전세임대 신청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였다면 어디에서 접수신청을 하여야 하나요?

- 접수신청은 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공고 이후 전세임대 신청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였다면 모집공고 당시 거주지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.

Q 8.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신청하고 계약 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였다면 계약체결을 할 수 없나요?

- 신청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였다더라도 전세임대주택 지원은 가능합니다. 다만, 전세주택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당초 신청지역 (공고일 현재 주소지)에 따라 전세주택 지원이 가능합니다.

예) 서울 강남구 신청자 → 신청후 경기 성남시로 이전시 서울에서 전세주택 지원 가능

Q 9. 아들(딸)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고 있어도 전세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가요?

- 자녀들 중 일부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전세임대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자인 자녀는 반드시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받은 주택으로 전입신고 되어야 하며, 대학생 자녀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.

2 자격 조회

Q 10. 입주대상자의 자격 검색은 어떻게 하나요?

-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선정시 기초생활수급자,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여부 및 해당 세대의 소득 등은 보건복지부의 '사회보장 정보시스템'을 이용하여 파악하므로, 입주대상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 임대주택 신청이 간편합니다.

Q 11.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추가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- 국토부 훈령 개정에 따라 입주대상자(세대원포함)전원의 금융자산 조회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필요한 법정양식인 “금융정보제공동의서” 및 “자산보유사실확인서”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Q 12. 자격조회 범위(대상)는 어디까지 인가요?

- 소득산정 및 토지, 자동차 소유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.

Q 13. 소득 산정시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?

- 해당 세대의 소득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소득항목별 소득자료 제공기관에 별도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3 동일순위 경합시 가점 부여

Q 14. 전세임대 동일순위 경합시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 항목 중 “자녀의 수”는 어떻게 산정하나요?

- 민법상 미성년 자녀(만 19세 미만)만 자녀수로 인정하며, 자녀수가 2인인 경우에는 태아가 아니고 두자녀의 성별이 다른 경우에만 가점을 부여합니다.

Q 15. 현 거주지 상태에 대한 가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?

- ‘전용면적’은 확정일자를 날인받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하며, ‘지하층’은 해당 주소의 건축물관리대장 등 현 거주지의 지하층 여부가 기재된 서류를 통해 확인합니다.

4 계약 및 입주

Q 16.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?

-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므로,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였다라도 계약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.

Q 17. 전세임대에 입주하게 되면 20년간 거주가 보장되는 건가요?

- 다자녀 전세임대는 최초 임대기간이 2년으로 재계약은 9회까지 가능합니다. 따라서 전세기간 2년을 전부 채운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거주기간 20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

Q 18. 친척 소유의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-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·비속 소유의 주택은 전세임대주택으로 지원받을 수 없으며, 가족관계증명서로 주택소유자를 확인합니다.

Q 19. 전세임대주택 입주시 도배·장판은 어떤 경우에 시공해 주나요?

- 도배장판은 지역관행에 따라 전세계약 체결시 주택소유자가 시공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, 입주자가 도배장판을 시공해야 하는 지역 중 도배장판이 훼손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전세지원기간 중 1회에 한해 시공비용의 일부(현재 60만원 한도)를 지원하고 있으므로, 지원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본부에 신청하여 지원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

Q 20. 전세임대주택 지원시 전세지원금 외에 지원해주는 비용은 없나요?

- 전세임대주택 지원시 지원한도액에 따른 중개수수료와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료 및 지역 관행에 따라 입주자가 도배·장판을 시행하는 경우 도배·장판 시공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, 기타 제반 소요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.